

# 2026년 제4회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

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26년 제4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9일

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

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### ○ 채용분야 및 인원

직종 및 분야		인원	담당업무	근무형태
계		32명		
기간제근로자	수국페스티벌 안전관리 환경정비	3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출입통제구간 관리</li><li>안전사고 예방</li><li>산책로 쓰레기 수거</li><li>시설 내·외부 환경미화</li><li>화장실 청결관리</li><li>화장실 소모품 관리 등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채용기간: 2026. 6. 2. ~ 2026. 6. 30</li><li>근무일: 주 6일 근무</li><li>※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 상이함</li><li>근무형태: 1일 8시간</li><li>근무시간: 09:00 ~ 18:00</li><li>※ (필수)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</li></ul>

### ○ 근무조건

- 급여(시급제): 시급10,320원, 교통보조비,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
※ 연장근로(시간외근무, 휴일근무) 및 야간근로 수당 별도 지급
- 채용 기간 및 인원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인원 중 예비합격자를 별도 선발 하며 결원 발생 시 충원할 수 있습니다.
- 공단 사업 조정이나 인사 운영에 따라 전보 및 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근무일 및 시간은 근무 시설 근무표에 따릅니다. (근무일 선택불가)

##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### ○ 채용 응시자격

구분		응시자격
공통사항	일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<b>[붙임 1]</b> 참조</li> <li>○ 채용 공고일 전일(2026. 5. 18.)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하며,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</li> <li>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</li> <li>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</li> <li>○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(2026. 2. 19. 이후)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에 재직할 경력(일 근무시간 7시간 이하), 단기간근로자(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)는 재직 경력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</li> </ul>

## 3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

### 가. 시험일정

구분	채용절차	시험일정	비고
1	채용 공고	2026. 5. 19.(화) ~ 5. 22.(금)	공단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
2	응시 서류 접수	2026. 5. 19.(화) ~ 5. 22.(금) 16:00	현장 및 인터넷 접수 병행
3	면접시험 공고	2026. 5. 26.(화)	공단홈페이지
4	면접시험	2026. 5. 27.(수) 예정	공단본부
5	최종합격자 발표	2026. 5. 28.(목)	공단홈페이지
6	합격자 등록	2026. 5. 28.(목) ~ 6. 1.(월)	공단본부
7	근로계약 체결	2026. 6. 2.(화) 예정	-

※ 서류전형 합격은 별도로 개별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일정은 접수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나. 시험방법

구 분		주요내용	비 고
1차	서류심사	응시자격 적격여부만 심사	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처리
2차	면접시험	공단인으로서의 정신자세, 책임감 및 의지·성실성, 가치관 및 도덕성, 예의·품행, 민원응대에 대한 면접	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

## 다. 가점 적용기준

구 분	적 용 대 상	가점비율
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	5~10%
장 애 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	5%

## 라. 가산점의 적용 및 예외 사항

### ○ 장 애 인

- '장애인증명서'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이 적용되며 채용일 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-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시 장애인 가점을 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 ○ 취업보호대상자, 취업지원대상자

- 국가보훈부에서 '취업지원대상자'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가산점이 적용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점 적용 없이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채용 시 가산점은 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 4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처: 채용 홈페이지 또는 공단 방문 제출

※ 방문접수: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20 3층 총무인사팀

나. 접수기간: 2026. 5. 19.(화) ~ 5. 22.(금) 16:00

다. 필수 제출서류

- 1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(공단 소정 양식)
- 2)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)

라. 증빙 제출서류

- 1)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2)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3) 경력증명서 또는 활동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4) 교육수료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5) 자격,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※ 응시원서 내 경력, 경험, 교육, 자격사항을 작성한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접수 불가

마. 중복지원 불가: 동일한 접수기간 내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채용에 중복 응시가 확인될 경우 모든 분야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온라인 접수 주소

- 1) 수국페스티벌 안전관리·환경정비 - <https://naver.me/FNt75hPV>

## 5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은 모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채용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 공단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(재직자 포함)은 응시가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지원 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, 재직 기간 중 단시간근로자(일7시간 이하), 단기간근로자(계약기간 3개월 이하)로 근무한 경우 재직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
나.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접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, 연령, 출신지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

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.

- 다. 최종 합격자 임용 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 처리 및 임용합니다.  
※ 채용 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 처리
- 라.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 하며, 근로 계약기간은 공고문의 종료일자로 합니다.
- 마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,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바.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.
- 아.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·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자.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.
- 차. 해당 선발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.
- 카. 채용시험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계별 채용결과 공고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(이의신청서 참고)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 :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☎ 052-226-0933

[붙임 1]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

〈 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 〉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실형,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다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7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10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